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인가 취소 근거 마련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471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인가 취소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업 인가 또는 전용수도 설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업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인가 취소 근거 마련

개정안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인가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인가신청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 ----- ----- ----- -----.
1. <u>인가</u> 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1. <u>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u> 를 -- ----- ----- ----- -----
2. <u>인가</u> 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u>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u> 를 -- ----- ----- -----

현행	개정안
3. (생략) ②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 인가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현행법 제17조¹⁾ 및 제52조²⁾ 등에 따라 일반수도 또는 전용수도사업

- 1) 「수도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2. 삭제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인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삭제
- ⑤ 시·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2) 「수도법」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①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

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등 인가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3조에 따라 인가관청은 ①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인가 취소를 할 경우 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인가취소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도사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서 「수도법」 제14조의4³⁾, 제15조의3⁴⁾ 및 제21조의

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3) 「수도법」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세부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수도법」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

55)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물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 및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대법원 판례⁶⁾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

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5) 「수도법」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 6.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 대법원 2004.4.28.선고, 2002두11752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정사유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2]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소정의 추정사유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채 3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는 것이고,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33